

의안번호	2207267
의 퇴 인	안호영의원
회 답 일	2025.1.10.
추계번호	24B597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5조(보험료율의 특례)	제8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이 취소된 사업의 경우에는 산재예방요율 적용을 취소하고, 산재예방요율을 적용받은 기간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부과하여야 함(제9항)	의무규정
		제8항제3호에 따라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이 취소된 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보험연도 재해예방활동의 인정기간비율에 따라 산재예방요율을 적용하여 다음 보험연도의 산재보험요율을 산정함(제10항)	재량규정
2	안 제21조(고용보험료의 지원)	국가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초기창업기업으로서 같은 법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청년창업기업에 해당하는 자가 제13조제4항에 따라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제2항)	의무규정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지원 수준, 지원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3항)	의무규정
3	안 제21조의2(산재보험료의 지원)	국가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초기창업기업으로서 같은 법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청년창업기업에 해당하는 자가 제13조제5항에 따라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제1항)	의무규정
		제1항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지원 수준, 지원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2항)	
4	안 제21조의3(지원금의 환수)	국가는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라 고용보험료 또는 산재보험료의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음. 다만, 환수할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함(제1항)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제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15조(보험료율의 특례)	—	• 미대상 — 본문 참조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미첨부 근거 규정
2	안 제21조(고용보험료의 지원)	×	• 미첨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 개정안은 청년창업자의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이므로, 고용보험기금의 수입 및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없음
3	안 제21조의2(산재보험료의 지원)	×	• 미첨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 개정안은 청년창업자의 산재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이므로, 산재보험기금의 수입 및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없음 - 본문 참조
4	안 제21조의3(지원금의 환수)	×	• 미대상 - 개정조항은 산재보험료 지원 조항에 따라 산재보험료의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음

2. 상세 사유

□ (안 제15조) 현행법은 사업주가 산재예방을 위해 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재해예방활동을 인정하여 산재보험요율을 감면해주는 산재예방요율제를 시행하고 있음

- 개정안은 재해예방활동의 인정기간 중에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재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므로,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의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는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비용추계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미대상 사유에 해당함

□ (안 제21조 및 21조의2) 개정안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청년창업자에 대해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이므로 국가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개정안의

시행으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가입이 확대될 경우 고용보험기금 및 산재보험기금의 수입 및 지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2020년 중소벤처기업부 전수조사 결과 전체 창업기업 수는 307.2만개로 이들 창업기업의 전체 고용인원은 361.2만명(기업당 평균 1.2명)임
 - 이 중, 30대 이하 창업기업이 675,140개(22.0%)¹⁾이며, 30대 이하 창업기업의 고용인원은 557,091명에 이름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의 지원 대상, 지원 수준, 방법 및 절차 등이 확정되어야 하나, 개정안은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하기 어려우므로 추가재정소요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음
- 따라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남 희	배아형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남 희	02-6788-3737	nhee@nabo.go.kr

1)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2020년 기준 창업기업실태조사(22년 조사) 결과 발표”, 2023.2.17.